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13호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도법」 제71조에 의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중 면제대상을 규정할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함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대상을 규정하여 공익 실현 활성화와 다른 법과의 연계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 및 제외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수도법에 의거하여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때에는 감면대상자 제외 신설(안 제4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4
- 팩스: 033-640-4070

4. 참고사항

-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의2(감면 및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법」 제71조제1항 중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u>제4조의2(감면 및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u></p> <p>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시설</p> <p>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p> <p>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p> <p>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법」 제71조제1항 중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한다.</p>